

국민의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나은 식약처	<h1>보도자료</h1>	배 포 2020. 2. 12.(수)
 식품의약품안전처 KMA 대한의사협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		식약처 유통안전화조치팀 채규한 팀장/김정연 서기관 ☎043-719-3651/3660) 화장품심사과 윤미옥 과장/양성준 연구관 ☎043-719-3601/3603) 총괄기획팀 김춘래 팀장/김지연 사무관 ☎043-719-3701/3702)
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 ☎ 02-794-2474)		

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마련

세계보건기구(WHO) 권고사항 채택...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 안내

- 대한의사협회(회장 최대집)와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는 코로나19(COVID-19) 예방을 위해 세계보건기구(WHO)의 권고사항(2020.1.29.)을 참고하여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와 사용법을 제시합니다.
- 이번 권고사항의 적용대상은 지역사회 일반인이며,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보건용 마스크(KF80이상)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,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, 건강한 사람이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, 의료기관 방문자, 감염·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가 해당됩니다.
 -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 -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고,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,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.

□ 의사협회와 식약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우리 국민이 이번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보건용 마스크를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.

<붙임>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

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

1. 목 적

세계보건기구(WHO) 권고사항을 채택하여, 코로나19(COVID-19)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마스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을 제시하기 위함.

단, 이 권고사항은 지역사회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2. 적용대상

지역사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개인(단, 의료기관 종사자 등 감염 우려가 있는 업무 종사자, 감염자는 제외)

3.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와 사용법

가. 보건용 마스크(KF80 이상) 착용이 필요한 경우

- 1) 기침, 재채기, 가래, 콧물, 목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
- 2) 건강한 사람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
- 3)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
- 4) 많은 사람을 접촉하여야 하는,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

예) 대중교통 운전기사, 판매원, 역무원, 우체국 집배원, 택배기사, 대형건물 관리원 및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등

나.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
혼잡하지 않은 야외, 개별 공간

다. 마스크 사용법

- 1)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을 것.
- 2)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후,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 지 확인할 것.
- 3)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말 것. 마스크를 만졌다면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을 것.